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20 년 월 인감/서명대조 (서명또는인) 지점 (서명또는인) 본인은 본 자료를 (수령)하고 자료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위 (이하 "은행"이라 한다)는 본 기본 계약서 (이하 "본 계약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외파생상품거래"라 함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 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하 "기초자산") 자체나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 초자산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한 선도, 옵션, 스왑거래나 이들 거래의 합성 혹은 변형에 해당하는 거래 중 한국거래소(그 승계기관 포함)가 개설하는 파생상품 시장이나 이와 유사한 해외 파생상품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통화현물환거래 포함)를 말한 다(이하 "거래" 라 한다.) 2. "거래당사자"라 함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한 거래의 당사자로 본 계약서의 첫머리에 날인 또는 서명한 고객 또는 은행을 말하며, " 거래상대방"이라 함은 거래당사자들 중 일방 거래당사자의 상대방을 말한다. 3. "거래확인서"라 함은 제3조 제1항과 같이 개별거래의 합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4. "기한전 거래종료일"이라 함은 귀책거래 종료사유 또는 기타 거래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거래종료일전에 도 래하는 거래종료일을 말한다. 5. "최종청산잔액"이라 함은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지정된 시점에서 양 거래당사자 사이에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순금액을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6. "개별거래"라 함은 본 계약서의 적용을 받는 각 거래를 말한다. 7. "채무불이행자"라 함은 제5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8. "신용제공인"이라 함은 담보관련문서에 따라 해당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담보나 보중 등의 신용보강수단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제 공한 자를 말한다. 9. "담보관련문서"라 함욘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에 따른 의무를 담보하거나 그 이행을 보중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를 말한다. 10. "영업일"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은행이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고, 금융기관간 외환시장에서 결 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 일을 제외한다.1) 제2조 (적용) ① 본 계약서는, 거래당사자들이 아래와 같이 배제되는 거래 또는 기타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한 거래를 제외하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본 계약서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거나 장래 실행하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적용된다. 전문에 의하여 본 계약서를 적용하는 장외파 생상품거래에 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적용할 다른 약정이 이미 있는 경우 해당 약정은 본 계약서 체결에 의하여 효력을 잃고, 본 계약 서는 해당 약정을 대신하여 해당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적용된다. 배제되는거래 (거래 유형의 특정 또는 계약의 특정에 의한 배제 포함): ② 본 계약서와 거래확인서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계약 관계를 구성한다. ③ 본 계약서와 거래확인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확인서에 의한 개별거래에 관하여는 거래확인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1) 필요한 경우 주식 또는 주가지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는, 대상 주식 또는 주가지수가 거래되거나 산정되는 시장에서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날도 제외할 수있음



제3조 (개별거래의 성립)

- ① 개별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전화, 팩스, 기타의 방법으로 거래조건에 합의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 ② 개별거래가 성립되면 은행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우편, 인편, 팩스,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고객에게 교부한다.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거래확인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해당 거래확인서가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거래확인서를 받은 후 제1항에서 합의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내용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거래확인서는 각 개별거래에 관한 중거에 해당하며, 거래확인서 작성 및 교부 전이라도 개별거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4조 (지급 등의 일반조건)

- ① 거래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나 인도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기일에 지정 계좌로 사전에 약정된 통화에 의해 즉시 사용가능한 자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인도는 거래 확인서에 명시된 기일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방법 또는 인도를 받을 자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지정한 방법으로 하기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거래당사자의 의무 이행은 다음 각 호의 선행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 1. 거래당사자 사이에 담보제공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유효한 담보관련문서와 담보를 제공하였을 것
 - 2. 기타 합의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을 것
- ④ 거래당사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기일의 5영업일 전 통지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도의 수령을 위한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계좌변경은 거래상대방이 변경통지수령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통지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⑤ 거래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일방 거래당사자가 특정일에 특정 개별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어느 통화로 일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거래상대방은 동일한 날에 동일한 개별 거래에 따라 동일한 통화로 일정 금액을 해당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날짜에 각 거 래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해당 통화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대등액의 범위내에서 이행하여 소멸되는것으로 보고, 거래당사자들의 의무는 지급할 금액이 많은 거래당사자가 각 거래당사자가 지급할 금액의 차액만을 거래상대방에 지급하여야하는 의무로 대체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귀책거래종료사유)

거래당사자 또는 그의 신용제공인(이하 '당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것으로 본다. 다만, 어떤 사유가 본 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에 해당됨과 동시에 제6조에 의한 기타거래종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타거래종료사유로 인하여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귀책거래종료사유가 아닌 기타거래종료사유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를 귀책거래종료사유로 본다.

- 1. 지급일 또는 인도일에 본 계약서와 개별거래에 의한 지급이나 인도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이행사실을 거래상대 방으로부터 통지받은날 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 2. 제1호의 지급·인도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서와 개별거래에 의한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이행이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불이행사실이 거래상대방에게 통지된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 3. 본 계약서 및 담보관련문서에 따라 제공되는 담보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경우
 - 가. 당사자 등이 담보관련문서에 따라 준수되거나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담보관련문서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러한 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 나. 담보관련문서와 관련된 각 거래에 따른 당사자 등의 모든 채무가 변제되기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 그 담보관련문 서가 기간 만료되거나 종료된 경우 또는 그 담보관련문서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설정해준 담보 등이 그 일부에 있어서라도 효력을 상 실하거나 그 효력이 중단된 경우(다만, 위 각 경우에 원래의 계약 조건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거나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 다. 당사자 등이 담보관련문서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부정, 거부하거나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4. 당사자 등이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차입 관련 채무(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여부, 우발채무여부, 주채무자로서든 보증인 기타의 자격으로든 불문한다. 다만,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예금관련 채무는 제외한다) 또는 파생상품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에 대하여 해당 의무의 전부 또는 자기자본(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 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된 경우 또는 제 3자에 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된 경우로서 그 신청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하, 기각,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혹은 당사자 등에게 청산, 해산, 파산, 회생, 채권자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부채 전부 또는 대부분의 구조조정 또는 유예,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위한 결의, 결정 또는 합의 등이 있는 경우나 그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관리인 등이 선임된 경우 혹은 당사자 등에 대해 어음교환소의 거래 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 6. 당사자 등이 주된 영업을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이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7. 당사자 등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자산을 다른회사에 이전함에 있어 본 계약서와 담보관련문서에 의한 당사자 등의 모든 의무를 숭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 8. 당사자 등의 합병, 분할, 주식의 교환이나 이전 또는 자산의 전부나 중요 부분의 양도,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규모의 다른 법인자산의 양수, 자본구조의 현저한 변경, 경영권의 변동이나 관련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당사자 등의 신용도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 9. 당사자 등에 대하여 제8호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그 사업, 자산, 경영, 재무상황에 중대한 부정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 10. 당사자 등이 은행에게 본 계약서 또는 개별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11. 당사자 등이 지급을 정지하거나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사실상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은행이 인정한 때
- 12. 본 계약서나 개별 거래에 의하여 당사자 등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기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 13.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제12호의 경우를 제외함)에 대한 압류, 체납처분, 경매개시 기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혹은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제12호의 경우를 제외함)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15일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 14. 당사자 등에 대하여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이 있거나 당사자 등에 대한 정보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경우
- 15. 그 밖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 (기타 거래종료사유)

당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영향을 받는 거래에 대한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1. 개별거래 체결 이후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해석변경이나 법원의 결정 등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등이 본 계약에 의한 개별거래를 이행 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되거나 당사자 등이 담보관련문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경우
- 2. 천재지변, 전시·사변, 파업, 통신장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개별거래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
- 3. 그 밖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기한전 거래종료일의 지정)

- ① 귀책거래종료사유 또는 기타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거래당사자는 이를 알게 되는 즉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사유 및 관련거래의 내역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당해 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기타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무불이행자의 거래상대방은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해당 귀책거래종료사유를 명시하여 모든 개별거래에 관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해지할수 있다. 다만 제5조 제5호 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유 발생일을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본다.
- ③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거래당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6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중 누구라도, 동조 제3호의 경우에는 은행이, 해당 기타거래종료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별 거래에 대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지일 이후 20일 이내의 특정 영업일을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하기로 한다.
-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한전 거래종료일의 지정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와 관련된 귀책거래종료사유나 기타 거래종료 사유의 지속여부에 관계없이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된 날에 대상 개별거래들은 유효하게 종료된다.

제8조 (기한전 거래종료시의 정산)

- ①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은행은 기한전 거래종료일 기준으로 최종 청산잔액을 계산한다. 은행은 최종 청산잔액의 계산에 있어, 양 거래당사자의 미지급액과 제11조에 의한 지연배상금 및 비용, 종료되는 거래의 시장호가를 합산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본 항에서 "미지급액"이라 함은 기 한전 거래종료일 이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거래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및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전에 인도, 결제 등의 비금 전적 이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거래종료일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의무의 공정시장 가치액을 말하며, "시장호가"를 계산함에 있어 시장호가가 결정될 수 없거나 타당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종료거래의 경우 기한전 거래종료에 따른 은행의 손실액(또는 이익액) 등을 참작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은행은 위 계산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장에서 활동하는 하나 이상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율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은행은 이와 같이 최종 청산잔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과 지급의무자를 가능한 한 조속히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최종 청산잔액의 지급일은 통지도달일로부터 [2]영업일 후의 날로 한다.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그 계산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산된 바에 따라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를 모두 지급한 이후 미확정 또는 미인지된 제세금 · 수수료 · 이자 · 배당 · 신주인수권 등으로 인한 정산금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추가 정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는 그 거래상대방에게 추가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각 거래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 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 (지급통화)

- ①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한 지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화로 하기로 한다.
- ② 제 1항에 의한 지급을 포함하여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에 따른 모든 지급에 있어 당사자간에 약정한 통화와 다른 통화로 지급이 이루 어진 때에는 그 지급은 해당 통화를 약정 통화로 환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화를 환산하는 경우 그 환산은 지급받은 당사자가 지급받을 당시의 현물환율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한다.

제11조 (지연배상금 및 비용)

- ② 채무불이행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다.
 - 1. 기한전 거래종료로 발생하는 관련 비용 및 인지세
 - 2. 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 3. 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 4. 기타 합리적으로 계산된 비용





5. 제1호 내지 제4호 기재비용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지출한 경우 그에 대한 제1항의 방법에 의한 지연배상금

제12조 (거래담당자)

- ① 고객은 고객을 위하여 은행과 개별거래를 체결하고, 은행에 개별거래의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따른 제반 행위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를 따로 둔 경우에는 그러한 담당자의 성명, 그가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감 및 연락처를 은행에 따로신고하기로 한다.
-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바뀐 때에는 이를 곧 은행에 알리기로 한다. 고객이 이와 같이 신고하기 전에는 은행이 신고사항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신고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은행은 본 계약서에 관련된 여하한 문서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고객이 은행에게 서면(팩스 포함)으로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 계약서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기본계약의 해지 및 수정)

- ①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본 계약서에 의한 각 거래당사자의 의무는 본 계약서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
- ② 본 계약서는 양 거래당사자가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

본 계약서에 의한 거래중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 (기타)

- ①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거래에 관한 국내의 법령을 적용하며, 국내의 법령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래에 관한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 ② 거래당사자는 개별거래와 관련된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녹음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개별거래에 의한 지급금액 등은 계산대리인이 계산하거나 결정하기로 하되, 거래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은행이 계산대리인이 되기로 한다.
- ④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통지한 자는 기한전 거래종료시 본 계약서에 의하여 양거래 당사자간에 지급할 금액 및 본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거래당사자간의 기타채권, 채무액을 만기의 도래여부나 지급 통화 또는 해당채권, 채무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통지 없이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지급할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나 일방 거래당사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계하는 거래당사자가 상계 당시의 현물환율을 포함한 거래 여건 및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환산 또는 산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하여 상계처리한 거래당사자는 그 상계의 내역을 거래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통지하기로 한다.

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①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거래당사자가 이 약관 또는 개별거래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위험고지)

은행은 본 계약서에 첨부된 별첨의 "일반위험고지문"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8조 (특별조건)

[본 조항은 개별거래당사자의 신용도나 거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1조 내지 제17조의 조건을 일부 수정하는 경우 그 수정항목을 기재 하는 조항입니다.]

※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